

제3128호
2024. 9. 27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
 편집인: 홍보담당관 유진영
 전화: 3396-4955
 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58호

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06.)로 도시정비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5호(2023.10.19.)로 정비계획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-15호(2024.02.28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9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95-12번지 일대
 - 면 적 : 2,186.4㎡ (대지 1,916.6㎡, 정비기반시설 269.8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을지로9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은
 -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양로 191, 8층 씨8788호 (중동, 씨티프라자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4년 9월 27일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층)	높이 (m)	용 도
1,916.6	1,051.07	54.84	31,136.09	1,081.78	지상21/ 지하8	94	업무시설 근생시설

※ 구보게재료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)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외로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는 공무원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[illegible]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1)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

공급대상	업무시설(㎡)	근생시설(㎡)	추산액 (종후평가액)
계	4,716.72	1,233.22	73,082,500,000
토지등소유자	4,716.72	1,233.22	73,082,500,000
일반분양	-	-	-
임대주택	-	-	-

2) 보류지 및 체비지 시설

공급대상	업무시설(㎡)	근생시설(㎡)	추산액 (종후평가액)
계	25,155.99	30.16	283,417,500,000
보류시설		30.16	499,100,000
체비지 시설	25,155.99		282,918,400,000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		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
종류	규모(㎡)	시행자	부담자 및 부담내용	관리청	종류	규모(㎡)
도로	269.8	을지로95 피에프브이주식회사	시행자부담설치후 무상귀속	서울특별시 중구	도로	20.8
공공청사 (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)	(273.0)	을지로95 피에프브이주식회사	시행자부담설치후 무상귀속	서울특별시 중구		
계	269.8					20.8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

6.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 (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 ☎02-3396-5772)